

---

# 20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

---

2024.7.

경영기획본부  
인사혁신부 윤리팀

## 1. 인권영향평가 개요

### (1) 인권영향평가 목적

- (목적) 연구원 경영과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재적·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인권경영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

### (2) 평가 절차

- 기관 최적화된 인권영향평가 시행 계획 수립('24.6)
  - '23년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기관운영 11개 분야 150개, 대표사업 (양성자과학연구단) 4개 분야 24개 등 총 174개 지표 대상 평가
  - '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'보완필요' 로 평가된 지표에 대한 개선과제 이행 여부 점검
- 평가 지표 관련 부서 사전교육(서면) 실시('24.6)
- 기관운영/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부서 체크리스트 평가, 근거자료 수집('24.6)
- 지표별 제출된 근거자료 기반의 인권영향평가 실시('24.7)
- 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('24.7)
- 인권경영위원회 결과 보고('24.12 예정)

## 2.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

### (1) 기관운영 부문

번호	분야	지표수	진단 결과				
	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30	30	-	-	-	-
2	고용상의 비차별	12	12	-	-	-	-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7	7	-	-	-	-
4	강제 노동의 금지	2	2	-	-	-	-
5	산업안전 보장	18	17	1	-	-	-
6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5	2	3	-	-	-
7	현지주민의 인권 보호	4	2	-	-	-	2
8	환경권 보장	9	9	-	-	-	-
9	고객인권 보호	4	4	-	-	-	-
10	근로자의 인격적 대우와 노동권 보장	50	49	1	-	-	-
11	개인정보 보호	9	9	-	-	-	-
합 계		150	143	5	-	-	2

### (2) 주요사업 부문

번호	분야	지표수	진단 결과				
	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1	양성자가속기/ 이온빔 시설 운영	8	8	-	-	-	-
2	안전관리	6	6	-	-	-	-
3	정보보호	5	5	-	-	-	-
4	지원활동	5	5	-	-	-	-
합 계		24	24	-	-	-	-

### 3. 종합 의견

#### (1) 기관운영 부문

- 연구원은 ‘23년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컨설팅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부문 11개 분야 150개 체크리스트 지표를 구축함
- ‘24년 인권영향평가(기관운영) 결과 연구원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내용이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함
  - 총 150개 지표 중 ‘예’ 143개, ‘보완필요’ 5개, ‘해당없음’ 2개
  - 보완필요/해당없음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과제 도출 및 지표 조정 필요함
- 이미 관련 규정(ex. 인권경영 이행지침,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등)을 통해 준수 내용이 확인되어 점검이 불필요한 지표(기시행 지표)에 대해서 점검에서 제외하거나 점검 주기 연장(격년시행 등) 검토 필요
- ‘23년 평가에 따른 개선과제 3건(관련 지표 6개)에 대한 추진내용 점검 결과
  - ①인권존중 정책선언
    - ‘19년 수립한 인권경영헌장을 국내외 인권경영 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하고 선포식을 통해 기관장의 인권경영 의지를 전달함(개선 완료)
  - ②인권경영 성과
    - 인권경영 성과를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‘23년 평가결과 보고서를 공개함(개선완료)
  - ③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
    - 계약체결 시 대상기관 및 업체의 인권보호 이행의무를 요구하고, 서면으로 징구할 것을 과제 제시했으나 현재 인권 외 ‘청렴계약 이행’ 서약만 이뤄지고 있어 ‘인권’ 관련 내용 보강 필요(보완필요)
- ‘24년 평가 결과 다음의 개선과제 도출함
  - ①안전 보건관리 체계구축 분야 관련,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개선 요구받은 ‘안전인력 역량개발’ 강화 조치 추진
  - ②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관련,
    - ‘23년 실천과제 미추진으로 인한 추가 개선

- 구매계약 부서 외 외부기관 협력부서(ex.기술실시 계약, 시험 및 교정 서비스 등) 대상으로 추가 적용 검토 필요

\*계약체결 시 대상기관 및 업체의 인권보호 이행의무를 요구 및 서면 징구(지표6-1)

③지역주민 인권의 존중·보호 분야 ‘토지소유권’ 지표(지표7-1-1, 지표7-1-2) 관련, 담당 및 연계 부서 의견 수렴하여 지표 적정성 검토

④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, 기관장 친인척 괴롭힘 금지 지표\* 관련 규정 보완

\*기관 사용자 4촌 이내 혈족, 인척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지침(지표10-2-17)

## (2) 주요사업 부문

○ 연구원은 ‘23년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평가대상을 ‘양성자과학연구단(경주분원)’ 으로 설정하고 실질적·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4개 분야 24개 사업특화 지표를 구축함

○ 추진과제 점검 및 환류를 위해 ‘24년 인권영향평가(주요사업)도 양성자과학연구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점검내용 전체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함

○ ‘23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2건(관련지표 2개)에 대한 추진내용 점검

### ①이용자 선정

- 비경쟁/비공개 빔타임 이용자 선정 시 기존 연구단 내부위원 4인 구성에 외부위원 1인을 추가하여 심의 공정성을 향상시킴(개선 완료)

### ②안전관리 활동

- 대형가속기시설의 운영에 따른 시설부지 및 주변환경의 방사능 감시 보고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분석결과 보고 중(개선 완료)

○ 연구원은 정기적으로 다른 사업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궁극에는 모든 사업에 관하여 인권리스크를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나 1개 사업에 대해 이행과제 점검 및 환류를 위해 2회 이상 점검 요구됨

## 4. 전문가 검토

### (1) 내용

-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성·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인권경영 전문가\* 검토 의뢰

\*최창명 경영학(세부전공 윤리경영) 박사/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이사

- 평가 전반 및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검토 진행

### (2) 주요 검토 의견

-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‘인권실태조사’ 수행 요구됨

- 인권실태조사 결과 중 개선 필요 분야 및 지점 발굴하여 이를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 사항으로 연결하는 것 필요함

- 제·개정된 인권법률 반영을 위한 지표의 수정 및 개발 요구됨

- 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),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 등 관련

-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평가 결과 중대성 평가 수행 및 인권경영 로드맵 고도화 권장

- 평가 척도 개선 시 국가인권위원회 질의 활용 권고

### (2) 반영 계획

- 내부 인권실태조사는 규정 및 연간계획에 따라 하반기 실시 예정

- 차기 평가 시 지표 개선, 평가척도 변경, 중대평 평가 실시 등 검토 후 반영 예정